

「농약 콩나물」 그 누명을 벗어야 한다.

「농약 콩나물！」 마치 콩나물이 독극물이나 되는 것처럼 매스콤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보도해 왔다.
88년 3월 콩나물 유사이래 최대의 수난을 겪었던 사건의 여파는 그 흑백을 규명하는 소가 현재 대법원에 상소되어 있는데……

1987년 1월 28일자 중앙일보 사회면에 「市販콩나물 먹기가 겁난다」 「水銀함유량 허용기준의 16배 까지 초과」라는 제하에 6단짜리 기사가 커다랗게 실린다.

물론 그 다음날부터 시중에 콩나물의 소비가 격감해버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약간 팔린 것은 아마도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기사의 저재원은 중앙대학교 J교수의 논문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논문의 취지는 콩나물에 수은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쟁고 끓이는 과정에서 거의 소멸되어 버리고 먹을 수 있을 단계에서는 0.085~0.135ppm만 잔류하기 때문에 보건사회부 허용기준치인 0.1ppm에 미달된다는 것을 밝히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기사는 거두절미하고 수은 함유량만 강조해서 콩나물 업계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물론 그 연구논문의 제목이 「조리과정중의 콩나물 수은함유량」이기 때문에 콩나물에 수은이 함유되어 있어야만 연구가 가능했으리라 보고는 있으나 이미 우리나라에서 유기수은계 농약이 생산금지된지 10년이 지난 당시에 무엇 때문에 새삼스럽게 콩나물 수은문제를 연구하게 되었는지는 모르나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후 J교수는 연구목적이 잘못 보도 되었음을 사과하는 기사를 신문에 발표는 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하여 콩나물 업자들의 엄청난 피해는 보상되지 않았고 전국적으로 실시된 콩나물 수거검사가 있었으나 수은이 검출된 콩나물은 하나도 없었다.

그후 1년이 조금 지난 1988년 3월 7일 또다시 라디오, TV, 신문 등에 콩나물의 농약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콩나물 업계에는 엄청난 한파에 휩싸여 시련을 겪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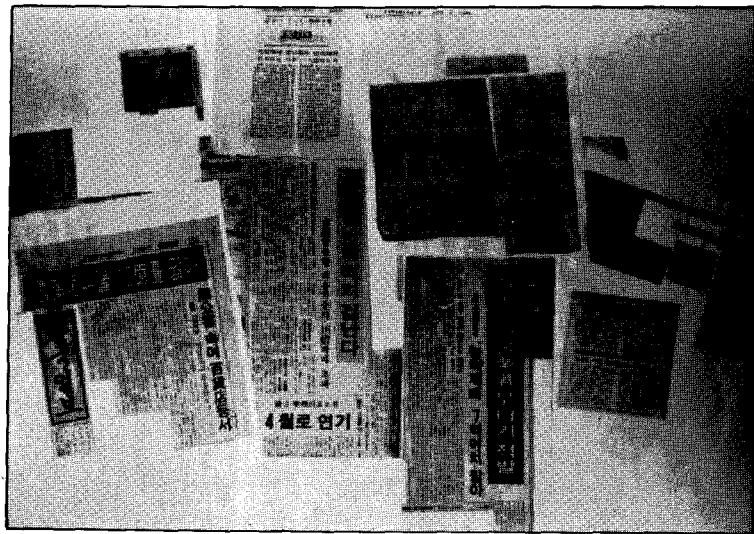
된다. 이번에는 볍씨종자소독약인 호마이수화제가 문제가 된 것이다.

매스콤들은 뉴스만으로는 부족했던지 기획기사, 만화, TV 코메디 할것없이 시도 때도없이 두들겨대며 콩나물을 독극물로 만들어 버린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고 벌써 10여년이 넘는동안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 되어온 사건이다. 처음에는 유기수은이 문제가 되었으나 요즈음에는 「카바메이트」계인 학술명 「치오파네이트」 메틸이 문제가 된것이다. 그것은 종자소독약이 유기수은계에서 보다 저독성인 「카마메이트」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10여년이상이 엄청난 사건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면서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가?

콩나물이 언론에 보도될때마다 항상 뒤따라 붙는 말이 있다. 성장



을 촉진시켜 재배시일을 단축하고 생산량을 높혀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이며 더구나 자기들은 따로 길러먹는다고…, 참으로 악덕업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콩나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엄청난 오해가 빚어진 것이다.

콩나물은 재배되는 농산물로써 채소류에 속한다.

말 그대로 종자인 콩에 싹을 내어서 나물로 먹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종자가 생명력이 강하여 발아가 잘되어야 하며 먹을수 있을만큼 클때까지 병들지 않고 잘 자라주어야만 한다. 물론 이것은 어느 농산물을 재배할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렇게만 된다면 농약이 없이도 어느 농사나 잘될수 있으며 농약의 위해로부터 해방될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발아가 부진할수도 있고 자라면서 병이 들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농약을 써서 구제하라고 지도도 하고 독려도 하고 때로는 정부차원에서 지원까지 해준다. 그런데 콩나물만은 병폐를 구제하였다가는 가차없이 구속되고

악덕업자가 된다. 이유는 사람이 먹는 식품에 농약을 썼다는 것이다. 즉 콩나물을 제조식품으로 오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재판에서 담당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어 식품위생법에 적용될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1. 콩나물은 농산물인 채소류

라는 점 그것은

첫째, 소관부처가 농림수산부 채소과이고

둘째, 경제기획원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분류번호 11116호로 콩나물재배업을 시설작물생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셋째, 보사부고시 제86-1호에서 기본식품종 콩나물은 채소류이고 그중에서도 엽채류로 지정하고 있

3. 9. 동양일보

콩나물함유 水銀 식탁선 문제안돼

정규원 <中央大學校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 교수>

1월 29일 일부신문·방송에서 보도된 본인들의 「콩나물의 조리과정에 따른 수은(진유람)에 관한 연구결과」에 대한 내용이 연구취지와 달리 보도되어 유감이다. 10여년 전부터 콩나물의 수은오염문제는 논의되어 왔던 것이나 그것을 모두 조

려용 기준치인 0.1PPM으로 건강상 피해가 없는 정도였다. 시판 콩나물의 수은함량이 많은 원인이 농약 또는 기타 성장촉진제 때문인지는 조사한바 없으나 가정해 콩나물에도 상당량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으로 미

조리하면 씻겨나가 허용기준치에 미달

집에서 직접 기른것에도 상당량 포함

리하기 전의 것으로 본인들은 조리후 임에 들어가는 단계에서는 일미인들의 수은함량이 남아 있어서 인체내로 흡수되는가를 알아위해 본 실험을 시도하였다. 실험결과 시판 콩나물이 가정에서 재배한 것보다 2배이상 수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조리과정에서 씻겨나가 먹는 단계에서는

투어 볼때 환경오염에 기인하는바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대중식품인 콩나물에 대해 「역기가 겁난다」「허용기준치의 16배」등으로 표현, 마치 이런 암을 섭취하는 것처럼 보도하여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연구하는 사람의 연구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으며 전기료도 농업용, 하수도 사용료도 재배용으로 되어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 콩나물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식품위생법의 2조 1호에서 식품의 정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말하며 이 음식물이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으로써 콩나물을 직접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려면 반드시 조리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식품의 재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둘째, 식품위생법상으로 정하는 허가 대상이 아니고

셋째, 이 법으로 규정하는 규격 또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3. 콩나물은 위생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콩나물이 재배기간이 짧다고는 하나 같은 성분의 농약 중 다른 채소류에서는 수확 2일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농약 관리법의 안전사용 기준에서 정하고 있

으며.

둘째, 「치오파 네이트메틸」은 저독성으로써 극히 피해가 적다는 점이다. 더구나 반드시 익혀서 먹는 콩나물은 끓이는 과정에서 대부분 산화분해되어 버리고 만약에 인체에 흡수되어도 축적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농약연구관의 증언)

셋째. 더구나 환경청고시 87-37호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에서 콩나물에서 문제가 된 농약이 다른 채소류에서는 5PPM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2PPM 정도는 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에 관하여 명확한 판례는 없다. 재판의 과정에서는 별 사건도 아닌 것처럼 진행이 되지만 그 판결은 「사람이 먹는 식품에 농약을 첨가하였다는 행위」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이다. 역시 제조식품으로 보고 있는 오해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사건을 담당한 이정우 변호사는 범씨 종자소독약을 콩나물 종자소독으로 사용한 것은 농약관리법상의 안전사용 기준의 위반은 될 수 있으며 마땅히 콩나물도 그 기준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업인들이 할 일은 이를 뒷받침하여 다같이 농약콩나물의 누명을 벗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T.V 코미디 프로

